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개인 사업자

·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2부
· 상품권 견본 (앞면, 뒷면)
·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표자 개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2부
· 상품권 견본 (앞면, 뒷면)
·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하나카드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가맹점용]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_____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은 "가맹점"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권의 신용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상품권"이라 함은 "가맹점"이 발행하거나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② "카드의 회원"이라 함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총칭하여 "카드"라 한다.) 회원과 해외 브랜드(VISA, Mastercard, JCB카드 등) 회원을 말한다.

③ "가맹점의 매장"이라 함은 이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매장으로 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카드사"의 회원이 카드(제휴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상품권(선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의 신용판매 매출 분에 한한다.

제3조(영업행위 통보)

① "가맹점"은 상품권의 발행 여부와 발행 또는 판매하는 상품권의 종류를 "카드사"에게 통보하고 "카드사"의 승인을 얻은 후 판매하여야 하며, "카드사"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게 통보하고 위탁 판매 계약해지에 따른 상품권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보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조(상품권의 판매)

①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이 "가맹점"의 매장에서 상품권(선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의 구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 특약 및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판매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이 "가맹점"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매출취소를 요구 할 경우 즉시 취소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이 특약에 의한 가맹점 번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월간판매한도)

이 특약에 의한 "가맹점"의 상품권 월간 판매 한도액은 _____ 원으로 한다.

제6조(특약 보증)

① 이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소정의 특약 보증금을 "카드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약 보증 종류는 현금, 지급보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다만, 현금 담보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다)

③ 특약 보증금 설정

1. 특약 보증 종류:
2. 특약 보증 금액:
3.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가맹점 매출채권(지급보류)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중 제2호의 특약 보증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공제하여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며, 그 공제된 금액(즉, 지급보류된 금액) 자체를 특약보증금으로 한다.
4.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한 경우 만기일 도래 시 "카드사"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특약보증금은 "가맹점"의 매출액 변동사항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특약이 해지되고, 가맹점 앞 미도래 할부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특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해외카드 매입내역은 미도래 할부잔액으로 간주하며 해외카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최종 매입건의 건별 매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도반환 또는 회원 이의제기 등의 가맹점 미정리 대금 및 채권(가)압류에 의한 압류금액 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한다.

제7조(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구입한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을 포함한 상품권 업종 전체에서의 월간(매월 1일에서 말일 까지) 이용한도는 100만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고객 문의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손해배상)

일방이 이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 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1조(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 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특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카드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주요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카드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제3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6.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한 것으로 "카드사"가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현금융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9. 제4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카드사"는 제2항의 경우에 특약 해지가 아닌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주기의 연장,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특약의 해석)

이 특약은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특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본 · 지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특약의 증거로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카드사]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66

상호 : 하나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리인 (인)

[가맹점]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인)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카드사용]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_____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은 "가맹점"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권의 신용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상품권"이라 함은 "가맹점"이 발행하거나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② "카드의 회원"이라 함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총칭하여 "카드"라 한다.) 회원과 해외 브랜드(VISA, Mastercard, JCB카드 등) 회원을 말한다.

③ "가맹점의 매장"이라 함은 이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매장으로 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카드사"의 회원이 카드(제휴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상품권(선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의 신용판매 매출 분에 한한다.

제3조(영업행위 통보)

① "가맹점"은 상품권의 발행 여부와 발행 또는 판매하는 상품권의 종류를 "카드사"에게 통보하고 "카드사"의 승인을 얻은 후 판매하여야 하며, "카드사"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게 통보하고 위탁 판매 계약해지에 따른 상품권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보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조(상품권의 판매)

①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이 "가맹점"의 매장에서 상품권(선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의 구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 특약 및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판매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이 "가맹점"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매출취소를 요구 할 경우 즉시 취소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이 특약에 의한 가맹점 번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월간판매한도)

이 특약에 의한 "가맹점"의 상품권 월간 판매 한도액은 _____ 원으로 한다.

제6조(특약 보증)

① 이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소정의 특약 보증금을 "카드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약 보증 종류는 현금, 지급보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다만, 현금 담보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다)

③ 특약 보증금 설정

1. 특약 보증 종류:
2. 특약 보증 금액:
3.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가맹점 매출채권(지급보류)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중 제2호의 특약 보증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공제하여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며, 그 공제된 금액(즉, 지급보류된 금액) 자체를 특약보증금으로 한다.
4.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한 경우 만기일 도래 시 "카드사"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특약보증금은 "가맹점"의 매출액 변동사항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특약이 해지되고, 가맹점 앞 미도래 할부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특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해외카드 매입내역은 미도래 할부잔액으로 간주하며 해외카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최종 매입건의 건별 매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도반환 또는 회원 이의제기 등의 가맹점 미정리 대금 및 채권(가)압류에 의한 압류금액 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한다.

제7조(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구입한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을 포함한 상품권 업종 전체에서의 월간(매월 1일에서 말일 까지) 이용한도는 100만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고객 문의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손해배상)

일방이 이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 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1조(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 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특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카드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주요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카드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제3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6.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한 것으로 "카드사"가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현금융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9. 제4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카드사"는 제2항의 경우에 특약 해지가 아닌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주기의 연장,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특약의 해석)

이 특약은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특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본 · 지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특약의 증거로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카드사]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66

상호 : 하나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리인 (인)

[가맹점]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인)